

고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번호	4. 4. 5
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1997. 11. 19.

제 출 자 : 고 성 군 수

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11조 제8항의 내용중 농촌지도소장, 과장등의 정원을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책정하도록 개정('97.2.4)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선·보완 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농촌지도소장에 대한 직렬 명시(안제3조)
 - . 소장직렬을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개정

3. 본 문

고성군조례 제 호

고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고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소장) 지도소에 소장을 두며,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하고 사무를 총괄하고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 문 대 조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소장) <u>지도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</u> <u>사무를 총괄하고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</u></p>	<p>제3조(소장) <u>지도소에 소장을 두며, 소장은</u> <u>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</u> <u>하고, 소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직원을</u> <u>지휘 감독한다.</u></p>